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9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40,000,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13.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각 2021.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주요 내용 발췌).

B(이하 ‘갑’이라 함)과 A(이하 ‘을’이라 함)은 가칭 주)C를 설립함에 있어 을의 법인 주주 참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자금의 투자 및 지분]

1.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칭 주)C 신규법인 설립에 일금 2억원정을 투자한다.
2. 설립회사 지분의 13.4% 주주로 법인등기에 참여한다.

제2조 [회사의 설립]

1. 갑은 가칭 주)C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을을 주주로 등재한다.

제3조 [신규법인의 이사진 구성과 운영 및 관리]

1. 신규법인의 집행 이사진 및 임원은 갑, 을 협의에 따라 임명한다.
2. 갑은 신규법인의 시설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 특약: 라인은 D 직대라인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1억 원을 2017. 3. 9.에, 4,000만 원을 같은 해 3. 13.에, 4,000만 원을 같은 해 3. 14.에, 2,000만 원을 2017. 3. 15.에 각 지급하여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8. 1. 5. 위 투자약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처음에는 ‘통신 및 방문판매업’이 목적사항으로 있다가 2018. 2. 1. 삭제되고 ‘다단계판매업’ 등이 추가되었다), 서비스대행수수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자본금 5억 5,000만 원(발행주식 수 55만 주1), 1주당 1,000원)으로 설립되었고, D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피고가 감사로 취임하였다(그 후 D은 2019. 7. 1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가 2019. 7. 15. 감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

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D(주식수 294,700주, 보유율 53.58%), 원고(주식수 74,250주, 보유율 13.5%),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주식수 130,050주, 보유율 23.65%), G(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의 배우자로서 I가 G의 이름으로 투자함, 주식수 51,000주, 보유율 9.27%)로 구성되었다가, 그 후 2020. 3.경2) 주식회사 E이 G(I)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마. 주식회사 E은 의약외품(생리대, 종이제품, 생활용품 및 유아, 여성용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8. 4. 설립되어 피고가 대표이사로써 운영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 및 원고의 주금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2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 및 그 중 일부만 주금으로 납입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건 회사 설립비용으로 모두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 및 그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자체에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 지분의 13.4%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된 점, ②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인 2017. 11. 21. 피고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C 설립은 나한테 물어보심요. 앞으로 걱정말고. 5억으로 설립 시 지분이 13.4프로인데

만일 누가 추가 5억을 투자하면 지분이 8프로대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5억 투자규모가 완료되는 12월 15일 법인설립 신청함”이라며 명확하게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를 밝힌 바 있고, 여기에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법인설립 시 자본금 규모와 그 중 원고가 가져갈 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처음 예상한 규모 정도인 자본금 5억 5,000만 원에 설립되었고 원고도 약정한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정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회사 지분을 반드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가치도 액면가가 아니라 그 투자시기와 투자자 등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경영 아이디어, 영업능력과 기술력, 보유 및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와 자산 등 투자금액 외의 다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투자약정을 할 수 있는 점, ⑤ 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임원이고 회사 설립 전부터 설립된 후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의사소통을 하며 영업에 관여한 원고가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점, ⑥ 이 사건 회사는 다단계 판매회사로서 원고로서는 다단계 판매를 통한 고수익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의 상승작용을 기대하여 투자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사기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선택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전항 기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합의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선택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3.경 자신의 투자금 중 7,425만 원만 주금으로 투입된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자신은 빠질 테니 투자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6. 3. 원고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투자금 2억 원을 10일 내로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반환을 약속하였다. 특히 2020. 8. 11.에도 원고가 카카오톡으로 “2억 5천3) 꼭 필요한 돈입니다. 계속 미루고 안되니 기다리다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도 “네”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명의개서에 관해서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해주기로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3,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

2020. 4. 10.

원고: B대표님 ~~ 지분 빼주는거 언제까지 가능해요? 연락주세요

피고: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달은 안될듯하고

원고: 그럼 5월에 될까요?

2020. 4. 13.

원고: 지난 번에 얘기한 거 답이 없어서. 답주삼

피고: 일단 이번 달은 안될 듯하고 이야기해둬. 사람들에게

원고: 누구한테?

피고: 아시는 분들이요.

원고: E 수입으로 바로 해줄 수 없어요? 지난 번에 지분 빼준다고 할 때는 바로 해줄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

피고: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20. 5. 12.

원고: B대표님~~ 여러가지로 바쁘시죠? 저도 코로나로 병원사정도 좀 힘들고 여러가지로 리모델링도 해야하고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네요. 지난 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5월 안에 해주시는 걸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2020. 6. 3.

원고: B대표님 몇일까지 될까요

피고: 진행중입니다. 마무리되면 10일 안에는

원고: 네... 빨리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 당연

2020. 6. 7.

원고: B대표님... 10일전에 되는거지요?

2020. 6. 8.

피고: 준비중 이번주는 안넘길듯함

2020. 6. 11.

원고: B대표님. 이번 주가 끝나가요. 이번 주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2020. 6. 15.

원고: B대표님. 한 주가 지났어요. 언제 되나요?

피고: 이번 주에 마무리

2020. 7. 6.

원고: B대표님~ 계약은 잘됐나요? 저는 언제 주시나요~~

피고: 목

원고: 목요일에 나한테 부쳐준다는 말?

피고: 네

2020. 7. 9.

피고: 월요일로 연기가 됐어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심

원고: 네. 플리즈~~

2020. 7. 14.

원고: B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언제 주실수 있는지

피고: 돈이 크다보니 참.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게요.

원고: 계약금요? 네 잘되길요.

2020. 7. 27.

피고: 자꾸 늦어지죠. 죄송하고 이번 주는 반드시 처리가 될 듯합니다.

원고: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2020. 8. 3.

원고: B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피고: 이번주에 될겁니다.

원고: 네 꼭요.

2020. 8. 11.

원고: B대표님 너무 힘드네요. 2억5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계속 미루고 안되니 기다리다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피고: 네

2020. 8. 13.

피고: 좀만 더 기다려주심. 진행 중이에요. 큰 건이다 보니

원고: 그러니깐 그게 언제인가요. 몇 달째 기다렸잖아요

2020. 8. 29.

원고: 공장 시작하고 공장에서 벌은 거로 B대표님 여이사 둘다 집사고 비싼 차 타고 3년동안 생활 비로 받은 것만 내가 투자한 2억5천이 넘을겁니다. 나한테는 라인타서 돈벌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빼라고 해서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미국 출장가라고 해서 천만원도 넘게 썼죠. 회사 돈이 없으면 개인 돈으로라도 제 원금 2억 5천 주세요. 돈 부친 것도 모두 B 개인통장이네요. 4년만에 원금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주면 양심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은 못기다려요

2020. 9. 21.

피고: 이 말씀 하나는 확실히 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가 진행하는 건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E가 인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G의 지분을 E에서 인수한 것처럼 E이 잘되면 주식을 인수하려고 한 것일 뿐 해제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이 사건 투자약정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몇 차례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가 무언가 계약 관련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취지로 계속 미루는 듯한 언급이 반복된 점, ③ 그러자 원고는 회사 돈이 안 되면 피고 개인 돈으로라도 빨리 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피고 개인이 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피고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투자금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1) 원래는 자본금 5억 1,000만 원(51만 주)이었다가 2018. 2. 24. 변경

2) I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20. 4월 ~ 5월경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2020. 3. 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I씨 지분 E가 인수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일응 2020. 3.경 지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자녀들인 J, K이 피고에게 별도로 투자한 돈 5,000만 원 포함한 금액이라고 한다.